

BASIC 해설서 저작권 침해사건(1)

PC-8001용 BASIC 인터프리터(Interpreter)의 소스 프로그램의 저작권
東京地裁 昭和62年 1月 30日 判決, 昭和 57年(7) 第14001號 事件,
認容(控訴) (判夕 631號 100면, 判時 1219號면 BASIC 解説書 著作權
侵害 事件

이런 事例는 1990年 5月 13日부터 5
月 14日에 걸쳐 일본 近畿大學本部에서
개최되었던 아세아 知的所有權法會議의
일부 發表內容을 본인이 發表者의 許諾
를 얻어 번역 게재한 것임.

播磨良承 近畿大學教授
中材明比古 近畿大學講師
趙哲顯 韓國辨理士

要地

本件 著作物은 program言語에 관한 高度한
專門的 知識을 驅使하여 作成되었고, prog-rom
作成者의 學術的 思想이 表現된 著作物이다.
따라서 program의 code를 複製하여 印刷出版
한 해설은 本件 著作物을 侵害하였다고 보여져,
本件判決은 operating system에 대한 著作權
의 法的 보호를 명확하게한 判決로서 注目된다.

특히, 本件 著作物인 pc-8001用 BASIC In-
terpreter 의 source program을 作成하고, 이
것을 object program으로하여 ROM으로 複製
格納하여 販賣하고 있는 것을, ROM으로부터
판독하여 16進code로 置換出版하는 행위는 複
製에 해당하고, 逆 Assemble하여 Label과
Comment 를 붙이는 행위는 著作權 侵害의 違
法性을 阻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本件
判決에 注目하기바란다.

事實

原告 X(美國法人)는 訴外A로부터 依頼를

받아서, PC-8001용 BASIC Interpreter prog-
ram을 開發(以下 本件 著作物 또는 本件 著作
物에 버금가는 program이라고 함)하여 訴外A
에서 인용하였다. 訴外A는 이것을 ROM으로
複製하여, PC-8001 personal computer(以下
퍼스컴이라고 함)에 組立하여 販賣하고 있다
(또한 原告 X는 本件 著作物을 美國에 있어서
販賣, 頒布하고 있지않음). 本件 著作物은 X의
發意에 의거하여 X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職務上 作成하여, X名義下에 公表한 것이므로
X에게 著作權이 있다.

本件 著作物을 만족하는 program은 本件 퍼
스컴에 組立된 BASIC Interpreter의 source
program이고, 이 program은 micro pro-cessor
를 이용한 소형 computer system인 本件 퍼스
컴에 입력된 BASIC言語의 명령 내지 program
을 解説하여 Micro-processor를 처리할 수 있
는 명령어 기타의 情報를 逐語的으로 變換하는
operating system이며, 記號語(Assembly 言
語)를 사용하여 表現하고 있다. 本件 著作物은
이것을 Micro processor가 처리할 수 있는 二
進的 電氣信號(binary code)로 變換된 program
을 本件 퍼스컴의 computer system의 記憶裝
置인 ROM으로 複製되어, 收納되어 있다.(機
械言語로 變換된 program을 本件 object prog-
ram 이라고 함). X는 本件 program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一般的으로 computer
program이라는 것은 電子計算機를 機能시켜
서-정한 結果를 얻는것을 目的으로하여 指令
을 組合한것으로서 表現한것이며, 이 指令은

화제의 판례

program 言語의 命令기타 情報를 組合하여 작성되고, program 著作者의 高度한 學術的思想을 表現하여, 또한, 個性的인 特長을 가지므로, 著作權法 第2條1項1號에서 말하는 「思想을 創作的으로 表現한것이며, 學術의 範圍에 속한 것」에 해당하고, 同法10條1項1號에서 말하는 「기타의 言語의 著作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本件 著作物에 관해서는 本件 퍼스컴을 BASIC 言語에 의하여 對話型으로 容易하게 稼動시키도록 機能시켜서, BASIC 言語의 命令 또는 program을 逐語的으로 처리하여 그 命令 또는 program을 入力한 者가 의도한 結果를 出力하는것을 目的으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本件 著作物은 合計299가지의 Routine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의 하나인 CSAVE Routine 이라고 이름 붙여진, Routine 중의 특히 COINT라고 이름 붙여진 module을 예로 들어 個個의 명령의 內容을 分析하여, 本件 著作物이 思想을 創作的으로 表現하고 있다」로 하여 상세한 설명을 전개하고 있다.

他方被告 Y₁은, 昭和57年 6月경, 本件 퍼스컴에 組立된어있는 本件 object program을 그대로 16진수의 code로 置換하고, 本件 object program의 전부를 複製하여, 다시금 本件 object program을 逆Assemble하여 解讀하고, 本件 著作物의 전부를 無斷複製하고, 또, 被告 Y₂는 上記複製物을 圖書에 印刷한것이며, 前者의 複製行爲는, 本件 著作物의 複製物을 다시금 複製한것이며, 被告 Y₂는 이 複製物을 圖書(以下 本件 圖書라고함)로 印刷하여, Y₁이 이것을 頒布한 것이기 때문에 著作權法112條1項, 2項에 의거하여 本件 圖書의 出版頒布를 금지하고 廢棄를 구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Y₁, Y₂는 「本件 著作物은, operating system(기본soft)의 하나이지만, 이 operating system은 보다 効率的 또는 高速인 DATA의 처리를 目的으로하는 것이며, 科學에 있어서의 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 思想이나 感情은 極力排除 되고, 合理性만이 추구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application program 이나 game의 program이 創作者의 목적에 따른 思想, 感情을 表現하고 있는 것과

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고, 「本件 著作物은 人格權的要素를 전혀 무시할 수 있는 科學技術에 있어서의 法制을 적용한 당연한 歸結로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本件 著作物은 著作權法의 보호대상으로는 되지않는다」라고 주장하고, 「逆 Assemble List를 해독하여, Label 및 Comment를 붙혀, 本件 圖書의 source List란의 各記載를 한 것은, Y₁은 本件 퍼스컴의 operating system을 研究한 結果를 發表한 행위이며, 上記 행위는 獨自의 創作活動이라고 評價하여야 할 것이며, 本件 著作物의 複製행위는 아니다」라고 反論하였다.

判旨

1. 本件 著作物은 X의 發意에 의거하여 X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職務上 作成한 것이며, X名義下에 公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著作權은 X에 속한다. 다시금 本件 著作物은 美國內에 있어서 일체 頒布되고 있지 않고, 訴外 A에 의하여 日本 國內에서 複製頒布된 것이며, 또 萬國著作權條約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보호의 義務를 지는 著作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著作權法 6條2號, 3號에 의하여 著作權法上의 보호를 받는다.

2. 本件 著作物은 PC-8001용의 BASIC Interpreter의 source program이고, 記號語(Assembly 言語)를 사용하여 表現된 것이며 美國 자이록社製의 Z80 Micro processor를 이용한 소형 computer system인 本件 퍼스컴에 입력되는 BASIC 言語의 명령내지 program을 해독하여, Micro·processor의 처리를 할 수 있는 命令語其他의 情報를 逐語的으로 변환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건 퍼스컴의 Hardware의 구성에 適合하고, program의 전체적 구성, 각 Routine의 구성, 각 address의 命令語其他情報의 조합에 관하여 創作者의 創意研究가 이루어지고 있다.

3. 本件 著作物은 Basic 言語에 의하여 本件 퍼스컴에 입력된 명령 또는 program을 逐語的으로 처리하여, 명령을 入力한 者가 의도한 結果를 出力하도록 program의 구성 Routine, subroutine의 활용, 조합에 이룰때까지 program

言語에 관한 고도의 專門의 知識을 구사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program 作成者의 學術의 思想이 표현된 것이 明白하며, 따라서 學術의 범위에 속하는 著作物에 해당한다.

4. Y₁ 등은 本件 著作物은 소위 operating system (기본 soft)의 하나인 점, 이것은 Application program 등과 다르며, 効率의이고 고속인 데이터의 처리만을 目的으로하는 것이며, 著作者의 思想이나 感情은 排除되는 것이기 때문에, 著作權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主張하지만 一般的으로 com-puter program에 관해서는 一定한 目的으로 도달하기 위한 解決手段은 確立하지 않고, 여러가지 解決手段의 선택이 가능하다. 本件과 같이 퍼스컴에 搭載하기 위한 Basic Interpreter를 作成할 目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전에 상세하게 檢討한 것과 같이 作成에 當面해서는 目的達成을 위하여 여러가지 問題를 細分化하여 分析하고 각각에 관해서 解法을 발견하여 上記 발견된 解法에 따라서 Assembly 言語에 의하여 명령 및 기타의 情報의 組合을 記述하여 program을 완성시킨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은 일정한 것은 아니고 作成者의 個性이나 思想을 反映시킨 것에 의해서서 다를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個別性에 價値를 認定할수가 있다.

이점은 Game의 program이나 application program이거나 本件과 같은 operating system program일지라도 조금도 변하는 것은 없다. 따라서 本件 著作物이 著作權法의 보호의 對象으로 되지않는다고 하는 Y₁ 등의 主張은 이윽가 없다.

5. Y₁이 本件 퍼스컴에 組立되어있는 本件 object program을 그대로 16진수의 code로 置換한 것, 다시금 本件 object program을 逆 assemble 한 反面, 해독하여 Label 및 Comment를 붙인 것은 當事者間에 紛爭은 없다. 同人의 前者의 行爲는 本件 著作物의 複製物인 本件 object program을 複製한 것이라고 解析할 수가 있다. 개인의 後者의 行爲는 本件 著作物과 동일한 것을 단지 Label 표시의 차이에만 표현한 것이며, 複製行爲에 해당한다.

6. Y₁ 등은 Y₁이 逆 Assemble List를 해독하여 Label 및 coment를 붙이고 本件 圖書의 source List 欄의 各記載를 한 것은 研究成果의 발표이며 獨自의 創作活動이라고 해야하기 때문에 著作權 侵害에는 해당되지 않는旨를 主張하지만, 原著作物에 依據하여 새롭게 작용한 것이 創作性 내지 獨自性을 가지는지 아닌지는 原著作物의 著作權을 侵害하는가 아니하는가인 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어야하며, 또 著作者가 source program으로서 공개하고 있지 않은 本件 著作物에 관하여 그 著作者의 思想에 반하여 발표하는 行爲가 利用者의 편의 때문에 正當化되는 여지가 없는 것은 當然한 理致이므로 Y₁ 등의 主張은 그 自體가 부당하다.

[研究]

1. 本件 判決에서 보는 사실에 관한 考察 우선 BASIC Interpreter에 관해서는 컴퓨터를 作動시켜서 일정한 目的을 達成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入力된 DATA를 目的대로 구하여야할 Target에 적합하도록 作動시키는 것이 우선 대전제로 된다. 컴퓨터 Hardware에 上述한 目的을 達成시키기 위하여 知的인 Software가 Hardware에 적합하도록 program될 必要가 생긴다. Hardware를 作動시키기 위한 operating system, data를 入出力시켜서 利用하기 위한 application program이라고 하는 software가 필요하게 된다.

本件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basic interpreter도, operating system의 하나이며, software의 한 방식이다. software 體系에 속하는 것으로서 LSI Bios(바이오스) basic interpreter, 응용(application) program 등이 있다. 각각의 software 機能, 收納 앞, 記述方法에 관하여보면, LSI 通信制御나 演算 등의 實行機能을 갖고 프린트基板에 實裝收納되고, LSI機能示方書에 記述된다. BIOS는 CPU-LSI로부터의 信號에 의하여 入出力 演算 등의 LSI를 作動시키는 operating system이며, Hardware 直結의 制御를 管理하는 program 機能을 갖고, ROM에 收納되고, Assem-bly 言語로 記述되어있다. basic interpreter 端末機로부터 입력된 1行分

의 basic명령을 그 行單位로 解釋하여 實行하는 것과 아울러 入出力用 operating system을 포함하는 것이며 ROM에 實裝되고, 컴퓨터에 常駐收納 되어있고 Assembly 言語로 記述된 subroutine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응용 program은 basic program의 行群으로 이루는 目的에 적합한 機能을 갖는 program이며, CASSETTE, DISC 등에 收納되고, basic으로 記述되어있다. 기타 program體系로서 ① BIOS BASIC Compiler- Basic 응용 program의 體系를 취하는 것은 Basic으로 記述된 一行마다의 program을 全體로서, 無理하지 않고, speed-up하는 software이며 一行씩의 實行은 할 수 없지만 Interpreter로 行하는 program으로부터 compile하여 고속으로 작동시킬수가 있다. ② BIOS-DOS(Disk operating system)-Basic compiler, interpreter-Basic 응용 program의 體系는 入出力, 演算뿐만아니고, floppy disk의 入出力과 disk상의 file의 取扱을 가능하게 한다. BIOS는 DOS를 判讀 Loader의 機能도 갖는다. ③ BIOS-C 言語-(UNIX, FORTRAN, COBOL, Prolog) 등의 응용 program의 體系에 있는 것, ④ BIOS-各 OS(operating system)-FORTRAN, COBOL, Prolog 등 응용 program의 體系 등이 있다.

OS가 다르면 FORTRAN 등은 他機種으로 移植할 수 없지만, FORTRAN 示方이 같으면, 응용 program Level에서 다른 컴퓨터로 移植 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software의 각각의 特徵을 말하는데 끝이지만, 本件에서는 Basic Interpreter의 source program을 object program으로서 ROM에 收納되어 判讀되고 있는 것으로의 複製가 侵害인가 아닌가가 紛爭되었던 사례이다.

2. program의 歸屬關係

本件에서는 本件 著作物에 버금가는 program의 權利歸屬은 紛爭되고 있지 않으나, X와 訴外 A와의 關係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必要할 것이다.

訴外 A는 自社の PC-8001의 Hardware 構成(LSI 사용, IC, 入出力機器, memory size, ROM 構成, memory bank의 割當 등을 갖는다)에 합한 basic의 作成(original版의 修正追加)을 X에 發注하여, X의 職務로서 완성한 점에서 訴外 A의 創意는 전혀 介入하지 않고, 開發을 依賴한 것에 의하여 完成品을 同社製品에 그대로 受納한 것으로 된다. 然이나 X의 本件 著作은 本國(自國)에서는 전혀 販賣되고 있지 않으나 X의 訴外 A의 販賣와 訴外 A의 日本에 있어서의 公表에 의하여 萬國著作權條約 2條나 著作權法 6條에서 보아서 內外人平等의 原則에 의하여 日本에 있어서도 X의 著作物로서 우리나라 안에서 著作權者로 될 수 있는 것에 異論은 없을 것이다.

3. Basic interpreter 著作物の 내용

本件 basic interpreter의 著作物은 基本構成으로서 美國 자이로社의 Z80이라고 하는 CPU-LSI(micro processor)를 사용하여 訴外 A의 PC-8001 위에서 作動시키기 위한 構成을 採用하고 있다. 그 機能은 電源投入(LSI의 初期 Reset start)으로 start하고, memory의 1番地로부터 實行 入出力 裝置의 초기 Reset, display의 初期表示, display에 「OK」出力하여 入力を 갖는다는 機能도 가지고 있다. program의 構成은 229의 program routine(하나로 합친 機能을 分擔하는 sub-program)으로 이루어지며, 이것들을 適宜組立하여 主 Routine을 形成하고 있다(詳細는 付記參照). <계속>

英·韓産業財産權(工業所有權)用語集

규격 : 국판 320면
발간 : 한국발명특허협회
가격 : 5,000원